

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

안전생활국
(일자리경제과)

재해·재난목적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□ 근거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·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

□ 재해·재난목적 예비비 사용내역

(단위 :천원)

연번	승인일자	사업명	승인액 (지출액)	지출사유
1	2021.5.10.	집합금지·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	600,000 (154,000)	- 2021.3.17. 구청장협의회에서 시·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으로 서울시 『집합금지· 제한업종 폐업 지원금』 제안 -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의 경영악화로 급격하게 폐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‘영업 중’ 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만 있어 폐업 소상공인 폐업부담 완화와 재도전 기반 마련
2	2021.4.27.	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	3,778,500 (1,141,042)	-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및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긴급 취업장려금 (구직활동비)을 지급함으로써, 청년의 구직 촉진 및 생활안정 확보

□ 재해·재난목적 예비비 사용 명세서

(단위 : 천원)

예 산 과 목					예산 내역		집 행 내 역
정책	단위	세부	편성목	통계목	소요예산	집행예산	
지역 경제육성	지역경제 활성화	집합금지· 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	이주 및 재해보상금	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	600,000	154,000	- 집합금지·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308명 × 500천원 : 154,000천원
	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구축	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	일반운영비	사무관리비	28,500	9,542	- 간편결제진흥원 수수료 : 6,286천원 - 홍보비 : 3,256천원
			일반보전금	사회보장적 수혜금	3,750,000	1,131,500	- 취업장려금 지급대상자 2,263명 × 500천원 : 1,131,500천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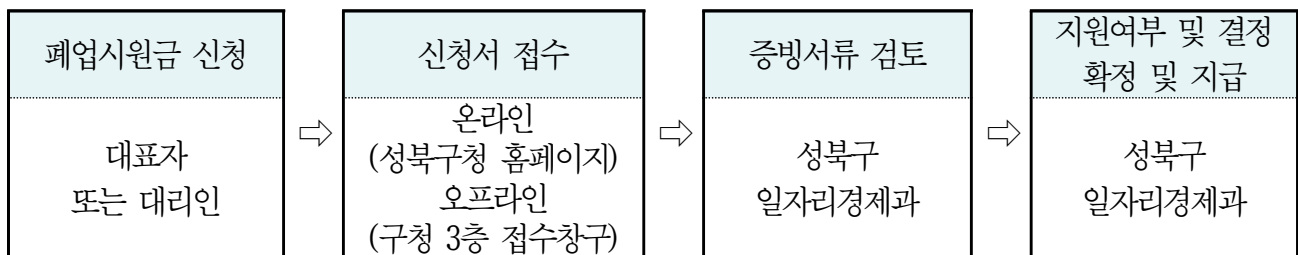
집합금지 · 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집행현황

- ☐ 사업기간 : 2021. 5. 10.(월) ~ 12. 10.(금)
- ☐ 지원내용
- 접수기간 : '21. 5. 10.(월) ~ 11. 30.(화)
 - 지원대상 : 집합금지 · 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 약 1,200개소*
 - 지원조건
 - 폐업일 : '20. 3. 22.(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) ~ '21. 8. 31.(사업공고일)
 - 영업기간 :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 (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, 폐업일 미포함)
 - 소상공인 기준 :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
 - ① '19년 또는 '20년 매출액이 10~120억 원 이하(음식·숙박 : 10, 도소매 : 50, 제조 120 등)
 - ② '20년 기준 5~10인 미만(음식·숙박 : 5, 도소매 : 5, 제조·운수 : 10 등)
 - 지원금액 : 현금 50만원

<*지원대상 추계>

- ① '20년도 폐업신고자 : 889개소
- ② '21.1월 ~ 3월 예상 폐업신고자 : 222개소 (74개소x3개월=222개소)
※ ('21.3월 기준) 우리 구 폐업지원금 예상 지원대상자
⇒ 1,111개소(889+222) + 폐업미신고자 89개소(예측치)= 약 1,200개소로 추계

☐ 신청처리절차



☐ 사업비 편성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총소요예산	기 편성예산	예비비 편성예산	예비비 비율
계	600,000	-	600,000	100%
국비	-	-	-	-
시비	-	-	-	-
구비	600,000	-	600,000	100%

☐ 지급 현황

지급건수(건)	예산액(천원)	집행액(천원)	집행잔액(천원)	비 고
308	600,000	154,000	446,000	

관련 법규

- ☐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 7조 <2021.5월6일 제정(의원발의)>
- 제7조(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) 구청장은 국가재난 등으로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(이하 “폐업 소상공인” 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- 이 경우,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.
1. 재창업 및 업종전환 지원
 2.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알선
 3.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집행현황

□ 사업기간 : 2021. 04. 26.(월) ~ 10. 29.(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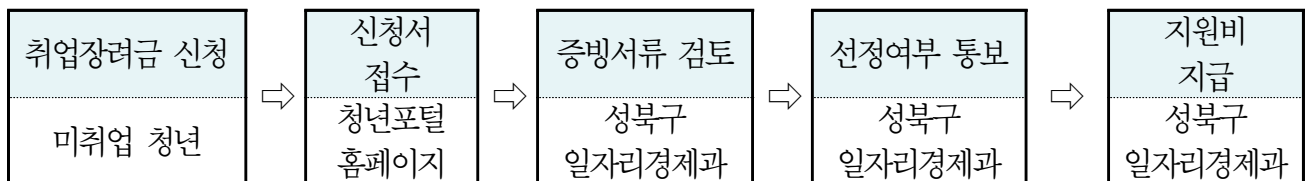
□ 지원내용

- 접수기간 : 1차) 2021. 4.26 ~ 6.25, 2차) 2021. 8.23 ~ 9.30.
- 지원대상 : 공고일 현재 성북구 거주 1986년~2002년생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약 7,500명*
- 지원조건
 - 최종학력 졸업(중퇴·제적·수료)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
 -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수급대상인 자, '20년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'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(1유형) 기참여자 지원대상 제외
- 지원금액 : 1인당 50만원 (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)

<*지원대상 추계>

- ① '21. 3월 기준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대상 중 미취업자 171,764명
 - 고등학교 졸업자(20년, 21년) 중 미취업자 61,355명
 - 대학이상 졸업자(19년8월~21년2월) 중 미취업자 110,409명
 - ② 성북구 만19세~34세 청년인구 99,495명, 서울시 청년인구 2,268,210명의 4.4%
 - ⇒ 171,764명 × 4.4% = 약 7,500명으로 추계
- ※ 대학이상 졸업자에 입대자, 외국인 유학생 등이 포함되어 차이가 날수 있음

□ 신청처리절차 : 서울청년포털(youth.seoul.go.kr)로 일괄 신청·접수



□ 사업비 편성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총소요예산	기 편성예산	예비비 편성예산	예비비 비율
계	3,778,500	-	3,778,500	100%
국비	-	-	-	-
시비	-	-	-	-
구비	3,778,500	-	3,778,500	100%

☐ 지급 현황

지급건수(건)	예산액(천원)	집행액(천원)	집행잔액(천원)	비 고
2,263	3,778,500	1,141,042	2,637,458	

관련 법규

☐ 「청년기본법」 제8조 및 제9조(청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)

○ 2021년 서울특별시 청년정책 시행계획, 청년정책조정위원회(국무총리) 심의·의결' 21.3.30)

- 서울시 주요 추진과제 :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

☐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」 제8조<2021.5월6일 제정(의원발의)>

○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의 안에서 취업장려금 등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.